

대구지방법원 2023. 4. 28 선고 2022가단14322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3. 3. 24.

판 결 선 고 2023. 4. 28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4. 2. 26. 접수 제400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피고의 어머니인 원고가 2014. 2. 18.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)을 증여한 사실(이하 ‘이 사건 증여계약’이라 한다), 피고가 2014. 2. 26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된다.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① 원고와 피고는 2022. 12. 5.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. ②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치료비,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, 피고가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,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한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①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② 피고가 원고에게 치료비, 생활비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원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전명환

별지